

증거보전신청

신청인 000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상 대 방 1)대한민국

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◇◇◇

2) ��시

위 대표자 시장 ◈◈◈

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귀원에 양식어업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어업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면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·감정을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증명할 사실

신청인이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내 500㎡의 어장에 양식하고 있는 현장을 검증하고 양식물의 종류와 어업수익금과 어업시설물 잔존가를 감정하여 명확히 입증함에 있음.

2. 증거의 표시

피면허자 ○○○(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)

허가구역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

면 적 500 m²

3. 증거보전의 사유

양식어업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의 소에 있어서 어업수익금의 출교 참과 시설물 잔존가를 산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인바, 어장을 철거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을 검증하고 어업수익금과 시설물의 잔존가를 감정하지 아니하면 위 증거를 입증하기가 곤란함.

소 명 자 료

1. 소갑 제1호증 어업면허장등본

1. 소갑 제2호증 내수면양식어업면허기간만료통보서등본

1. 소갑 제3호증 내수면양식어업면허기간만료재통보서등본

1. 소갑 제4호증 민원서류보완요구서등본

1. 소갑 제5호증 민원서류반려서등본

1. 소갑 제6호증 민원서류보완요구(2차)등본

1. 소갑 제7호증 어업면허만료에 따른 청문실시서등본

첨부서류

1. 위 소명자료 각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신청인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위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관련조문	민사소송법	제375조	내지	ww.klac.o
제출부수	신정서 1부 비 용	 인지액 : 〇〇	384조 ○원(☞민사접	수서류에	붙일	인
의 의	소송절차 내에서 본리					´
	증거방법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					
	확보하여 두는 판결절					, –

※ (1) 관할법원

- 1.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
- 2.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